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롯데케미칼주식회사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 ② 위원회는 독립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 363 조의 2 제 1 항, 제 542 조의 6 제 1 항·제 2 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제4조(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해임한다.
- ②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 ④ 위원의 임기 만료·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⑤ 제2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사임 등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제5조(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의 유고·출장·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제4조 제3항 및 제5항은 위원장의 임기에 준용한다.

제 3 장 회 의

제6조(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유고·출장·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소집절차)

- ① 위원회 소집 시 회의일을 정하고 회의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8조(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이사후보의 추천
2. 기타 독립이사후보의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관계인의 출석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보 칙

제12조(간사)

-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3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2026.7.23)

이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4.23)

이 규정은 202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4)

이 규정은 200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3.18)

이 규정은 200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